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소방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에서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 등에 대한 평가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방기본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시·도에서 수립한 소방업무 세부계획의 이행과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소방청에서 시행 중인 종합평가의 실시 근거를 대통령령에 명확히 정하고, 시·도의 소방업무 이행과 추진성과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도 소방업무에 대한 평가방법과 기준 등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없음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이행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에 관한 방법과 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3(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조의3(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이행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 <u>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에 관한 방법과 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u>
<u><신설></u>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혁신행정부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7241